|  |  |  |
| --- | --- | --- |
| **2.1.5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투자 관리방법**(외경무부 령 2005년 제28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상무부, 중국증감회,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제정한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투자 관리방법》을 이에 반포하고 반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제1조 주권 분리개혁 후 A주식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함)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전략투자를 규범화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수호하며 경외 선진 관리경험과 시술, 자금을 도입하고 상장회사의 운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상장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에 대한 지도의견》의 요구에 따르고 외국투자와 상장회사 감독관리 관련 국가 법률, 법규 및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이미 주권 분리개혁을 완수한 상장회사와 주권 분리개혁 후 새로 상장한 회사에 대한 외국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함)의 중장기 전략적 인수투자(이하 전략투자라 함)를 통한 당해 회사 A주식 지분 취득행위에 준용한다.  제3조 투자자는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이 방법에 따라 상장회사에 전략투자를 할 수 있다.  제4조 전략투자는 하기 원칙에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산업정책을 준수하고 국가 경제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2) 공개, 공정, 공평 원칙을 지키고 상장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정부와 사회공중의 감독과 중국 사법 및 중재 관할을 접수하여야 한다.  (3) 중장기투자를 권장하여 증권시장의 정상적 질서를 수호하며 투기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4) 공평경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국경내 관련 제품시장을 과분하게 집중시키거나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투자자의 전략투자는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합의양도, 상장회사의 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 및 국가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방식에 의하여 상장회사 A주식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분할투자가 가능하며 제1회 투자 완성 후 취득한 지분비율은 당해 회사 발행지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특별업종으로서 특별규정이 있거나 관련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3) 상장회사 A주식지분을 취득한 후 3년 내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4) 법률, 법규가 외국투자 지분비율을 명문으로 규정한 업종에 한하여 투자자 지분은 상술한 업종 지분비율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가 외국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한하여 투자자는 상술한 분야 상장회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5) 상장회사 국유 지주지분과 관련한 경우 국유자산 관리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자는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합법으로 설립 운영하는 외국법인 또는 기타 업체로서 재무상황이 안전하고 신용이 양호함과 아울러 성숙된 관리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경외 실질보유 자산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실질보유 자산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모회사 실질보유 자산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실질보유 자산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전한 운영구조와 양호한 통제장치가 있고 운영행위가 규범화되어야 한다.  (4) 최근 3년 간 경내, 경외 감독관리기구의 처벌(그 모회사 포함)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상장회사의 투자자 지정 발행방식을 통하여 전략투자를 하는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1) 상장회사 이사회가 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 및 회사정관 개정초안 결의를 채택한다. (2)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 및 회사정관 개정 결의를 채택한다.  (3) 상장회사와 투자자가 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계약을 체결한다.  (4) 상장회사가 이 방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관련 신청자료를 보고하고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5) 상장회사는 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을 완료한 후 상무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비준증서에 의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한다.  제8조 합의양도방식을 통하여 전략투자를 하는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수속한다.  (1) 상장회사 이사회가 투자자와 합의양도방식에 의한 전략투자 유치결의를 채택한다. (2)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투자자와 합의양도방식에 의한 정략투자 유치결의를 채택한다.  (3) 양도 측과 투자자가 지분양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4) 투자자가 이 방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관련 신청자료를 보고하고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5) 투자자가 상장회사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는 상술한 비준을 받은 후 증권거래소에서 지분양수 확인수속을 하고 증권등록결제기구에서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함과 동시에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6) 상장회사는 합의양도를 완료한 후 상무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비준증서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한다.  제9조 투자자가 합의양도방식을 통하여 상장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 할 경우 제8조 제(1), (2), (3). (4)호 절차를 통하여 비준을 받은 후 중국증감회에 상장회사 인수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보고하고 중국증감회의 심사, 확인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지분인수 확인수속을 하고 증권등록결제기구에서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술한 수속을 완료한 후에는 제8조 제(6)호에 따라 수속한다.  제10조 상장회사에 전략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증권법》과 중국증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공시 및 기타 법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미 상장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계속 전략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장회사나 투자자는 상무부에 하기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략투자 신청서(양식 별첨1 참조) (2) 전략투자 방안(양식 별첨2 참조)  (3) 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계약서나 지분양도합의서  (4) 담보추천기구의 의견서(투자자 지정 신주 발행인 경우)나 법률의견서  (5) 투자자의 지분유지 약정서한  (6) 최근 3년 간 경내, 경외 감독관리기구의 중대한 처벌기록이 없다는 투자자의 성명서와 비 중대처벌 유무 관련 설명서 (7) 법적 공증과 인증을 받은 투자자 등록증명, 법정대표자(또는 수권대표자)의 신분증명  (8)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최근 3년간의 자산대차대조표 (9) 상술한 (1), (2), (3), (4), (5), (6)호가 규정한 서류는 모두 투자자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권 대표자가 사인하고 수권대표자가 사인한 경우에는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수권서 및 관련 공증, 인증서류  (10)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전항에 나열한 서류 중 제(7)호와 제(8)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문원본을 제출하고 제(7)호와 제(8)호의 서류는 원본과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상술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내에 원칙비준 회답을 하여야 하며 원칙비준 회답의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제13조 이 방법 제6조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회사(‘모회사’)는 그 자산 전액을 소유한 경외 자회사(‘투자자’)를 통하여 전략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 방법 제9조에 나열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투자자의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모회사의 철회불능 약정서를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자는 상무부의 원칙비준 회답을 입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외국투자자 인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입금된 전략투자용 외환자금에 한하여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등록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외국투자자 특별외환구좌(인수류) 개설을 신청하고 구좌에 입금한 자금의 환 결제 및 구좌말소수속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자는 상무부가 제시한 상장회사 전략투자 비준서류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증권등록결제기구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투자자가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 전에 보유한 비 유통성 지분이나 상장회사가 제1회로 공개 발행한 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증권구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이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투자자는 자금 환 결제 일로부터 15일 내에 전략투자행위를 가동함과 동시에 원칙비준 회답 일로부터 180일 내에 전략투자를 완수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규정기간 내에 전략투자방안에 따라 전략투자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원칙비준 회답은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투자자는 원칙비준 회답 실효 일로부터 45일 내에 경외로부터 입금한 외환에 대하여 외환국의 확인을 받은 후 환 결제로 취득한 인민폐자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 경외에 송금해야 한다.  제17조 상장회사는 전략투자를 완수한 후 10일 내에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1) 신청서  (2) 상무부가 제시한 원칙비준 회답  (3) 증권등록결제기구가 제시한 지분 보유증명서  (4) 상장회사 영업허가증과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서  (5) 상장회사 정관.  상무부는 상술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증서에 ‘외국투자 주식회사(A주식 인수)’라고 명기한다.  투자자가 단일 상장회사의 지분 25%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간 계속 25% 이상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상무부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외국투자 주식회사(A주식 25% 또는 그 이상 인수)’라고 명기한다.  제18조 상장회사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유형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변경신청서  (2)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3) 증권등록결제기구가 제시한 지부보유 증명서  (4) 공증, 인증을 받은, 투자자의 합법적 개업증명서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타 서류.  변경 확인, 비준 시 영업허가증 기업유형 난에 ‘외국투자 주식회사(A주식 인수)’라고 명기한다. 그중 투자자가 전략투자에서 단일 상장회사의 지분 25%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간 계속 25% 이상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외국투자 주식회사(A주식 25% 또는 그 이상 인수)’라고 명기한다.  제19조 상장회사는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무, 세관, 외환관리 등 관련 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환관리부문은 그가 발급하는 외환등록증서에 ‘외국투자 주식회사(A주식 인수)’라고 명기한다. 투자자가 전략투자에서 단일 상장회사의 지분 25%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간 계속 25% 이상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외환관리부문은 외환등록증서에 ‘외국투자 주식회사(A주식 25% 또는 그 이상 인수)’라고 명기한다.  제20조 투자자는 하기 상황을 제외하고 증권(B주식은 예외)을 매매하지 못한다.  (1) 투자자가 전략투자로 보유한 상장회사의 A주식지분은 약속한 보유기간 만료 후에 매출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방식으로 인수하여야 할 경우 청약기간 내에 상장회사 A주식주주가 매출하는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 전에 보유한 비 유통성 지분은 주권 분리개혁을 완료하고 매출제한기간 만료 후 매출할 수 있다.  (4)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제1회로 공개발행 시에 보유한 지분은 매출제한기간 만료 후에 매출할 수 있다.  (5) 투자자가 약속한 주식보유기간 만료 전에 파산, 청산, 저당 등 특별원인으로 그 지분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 투자자 보유지분의 감소로 상장회사 외자비율이 25%이하로 내려간 경우 상장회사는 10일 내에 상무부에 비치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유지분의 감소로 상장회사 외자지분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가고 당해 투자자가 유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회사는 10일 내에 심사비준기관에 비치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투자자 보유지분의 감소로 상장회사 외자지분비율이 25%이하로 내려간 경우 상장회사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 기업유형 난의 ‘외국투자주식회사(A주식 인수)’ 애용을 조정한다. 상장회사는 영업허가증 변경 일로부터 30일 내에 외환관리부문에서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하고 외환관리부문은 외환등록증서에 ‘외국투자주식회사(A주식 인수)’라고 명기한다.  투자자 보유지분의 감소로 상장회사 외자지분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가고 당해 투자자가 유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회사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말소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하고 기업유형을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한다. 상장회사는 영업허가증 변경 일로부터 30일 내에 외환관리부문에서 외환등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모회사가 그 자산전액을 보유한 경외자회사를 통하여 전략투자를 하고 이미 규정기간 내에 완수한 경우 상기 자회사를 양도하기 전에 상무부에 보고하고 이 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양수 측은 이 방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상장회사에서의 그 모회사와 자회사의 일절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중국증감회에 보고, 공시 및 기타 법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자가 보유한 상장회사 지분을 A주식시장에서 양도한 경우 하기서류를 지참하고 상장회사 등록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외환매입을 신청하여 송금할 수 있다.  (1) 서면신청서  (2) 전략투자를 목적으로 개설한 외국투자자 특별구좌(인수류) 내 자금에 대한 외환국의 환 결제 확인비준서  (3) 상무부가 제시한 상장회사 지분구조 변경비준서  (4) 증권등록결제기기가 제시한 증권거래 관련 증명서류.  제25조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5%이하인 상장회사가 외채차입 시에는 경내 내자기업 외채차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제26조 관련 정부기구 공직자는 직무에 충실하고 직책을 엄수하여야 하지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가 숙지한 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투자자의 전략투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수속한다.  제28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별첨1: 전략투자신청서(생략)  별첨2: 전략투자방안(생략)  |  |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商务部令2005年第28号，根据2015年10月28日《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和规范性文件的决定》修正）　　商务部、中国证监会、国家税务总局、国家工商总局、国家外汇局制定了《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现予以发布，自发布之日起30日后施行。　　第一条 为了规范股权分置改革后外国投资者对A股上市公司（以下简称上市公司）进行战略投资，维护证券市场秩序，引进境外先进管理经验、技术和资金，改善上市公司治理结构，保护上市公司和股东的合法权益，按照《关于上市公司股权分置改革的指导意见》的要求，根据国家有关外商投资、上市公司监管的法律法规以及《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外国投资者（以下简称投资者）对已完成股权分置改革的上市公司和股权分置改革后新上市公司通过具有一定规模的中长期战略性并购投资（以下简称战略投资），取得该公司A股股份的行为。　　第三条 经商务部批准，投资者可以根据本办法对上市公司进行战略投资。　　第四条 战略投资应遵循以下原则：　　（一）遵守国家法律、法规及相关产业政策，不得危害国家经济安全和社会公共利益；　　（二）坚持公开、公正、公平的原则，维护上市公司及其股东的合法权益，接受政府、社会公众的监督及中国的司法和仲裁管辖；　　（三）鼓励中长期投资，维护证券市场的正常秩序，不得炒作；　　（四）不得妨碍公平竞争，不得造成中国境内相关产品市场过度集中、排除或限制竞争。　　第五条 投资者进行战略投资应符合以下要求：　　（一）以协议转让、上市公司定向发行新股方式以及国家法律法规规定的其他方式取得上市公司A股股份；　　（二）投资可分期进行，首次投资完成后取得的股份比例不低于该公司已发行股份的百分之十，但特殊行业有特别规定或经相关主管部门批准的除外；　　（三）取得的上市公司A股股份三年内不得转让；　　（四）法律法规对外商投资持股比例有明确规定的行业，投资者持有上述行业股份比例应符合相关规定；属法律法规禁止外商投资的领域，投资者不得对上述领域的上市公司进行投资；　　（五）涉及上市公司国有股股东的，应符合国有资产管理的相关规定。　　第六条 投资者应符合以下要求：　　（一）依法设立、经营的外国法人或其他组织，财务稳健、资信良好且具有成熟的管理经验；　　（二）境外实有资产总额不低于1亿美元或管理的境外实有资产总额不低于5亿美元；或其母公司境外实有资产总额不低于1亿美元或管理的境外实有资产总额不低于5亿美元；　　（三）有健全的治理结构和良好的内控制度，经营行为规范；　　（四）近三年内未受到境内外监管机构的重大处罚（包括其母公司）。　　第七条 通过上市公司定向发行方式进行战略投资的，按以下程序办理：　　（一）上市公司董事会通过向投资者定向发行新股及公司章程修改草案的决议；　　（二）上市公司股东大会通过向投资者定向发行新股及修改公司章程的决议；　　（三）上市公司与投资者签订定向发行的合同；　　（四）上市公司根据本办法第十二条向商务部报送相关申请文件，有特殊规定的从其规定；　　（五）定向发行完成后，上市公司到商务部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凭该批准证书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第八条 通过协议转让方式进行战略投资的，按以下程序办理：　　（一）上市公司董事会通过投资者以协议转让方式进行战略投资的决议；　　（二）上市公司股东大会通过投资者以协议转让方式进行战略投资的决议；　　（三）转让方与投资者签订股份转让协议；　　（四）投资者根据本办法第十二条向商务部报送相关申请文件，有特殊规定的从其规定；　　（五）投资者参股上市公司的，获得前述批准后向证券交易所办理股份转让确认手续、向证券登记结算机构申请办理登记过户手续，并报中国证监会备案；　　（六）协议转让完成后，上市公司到商务部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凭该批准证书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　　第九条 投资者拟通过协议转让方式构成对上市公司的实际控制，按照第八条第（一）、（二）、（三）、（四）项的程序获得批准后，向中国证监会报送上市公司收购报告书及相关文件，经中国证监会审核无异议后向证券交易所办理股份转让确认手续、向证券登记结算机构申请办理登记过户手续。完成上述手续后，按照第八条第（六）项办理。　　第十条 投资者对上市公司进行战略投资，应按《证券法》和中国证监会的相关规定履行报告、公告及其他法定义务。　　第十一条 投资者对其已持有股份的上市公司继续进行战略投资的，需按本办法规定的方式和程序办理。　　第十二条 上市公司或投资者应向商务部报送以下文件：　　（一）战略投资申请书（格式见附件1）；　　（二）战略投资方案（格式见附件2）；　　（三）定向发行合同或股份转让协议；　　（四）保荐机构意见书（涉及定向发行）或法律意见书；　　（五）投资者持续持股的承诺函；（六）投资者三年内未受到境内外监管机构重大处罚的声明，以及是否受到其他非重大处罚的说明；　　（七）经依法公证、认证的投资者的注册登记证明、法定代表人（或授权代表）身份证明；　　（八）经注册会计师审计的该投资者近三年来的资产负债表；　　（九）上述（一）、（二）、（三）、（五）、（六）项中规定提交的文件均需经投资者法定代表人或其授权代表签署，由授权代表签署的还应提交经法定代表人签署的授权书及相应的公证、认证文件；　　（十）商务部规定的其他文件。　　前款所列文件，除第七项、第八项所列文件外，必须报送中文本原件，第七项、第八项所列文件应报送原件及中文译件。　　商务部收到上述全部文件后应在30日内作出原则批复，原则批复有效期180日。　　第十三条 符合本办法第六条规定的外国公司（“母公司”）可以通过其全资拥有的境外子公司（“投资者”）进行战略投资，投资者除提交本办法第九条所列文件外，还应向商务部提交其母公司对投资者投资行为承担连带责任的不可撤销的承诺函。　　第十四条 投资者应在商务部原则批复之日起15日内根据外商投资并购的相关规定开立外汇账户。投资者从境外汇入的用于战略投资的外汇资金，应当根据外汇管理的有关规定，到上市公司注册所在地外汇局申请开立外国投资者专用外汇账户（收购类），账户内资金的结汇及账户注销手续参照相关外汇管理规定办理。　　第十五条 投资者可以持商务部对该投资者对上市公司进行战略投资的批准文件和有效身份证明，向证券登记结算机构办理相关手续。　　对于投资者在上市公司股权分置改革前持有的非流通股份或在上市公司首次公开发行前持有的股份，证券登记结算机构可以根据投资者申请为其开立证券账户。　　证券登记结算机构应根据本管理办法制定相应规定。　　第十六条 投资者应在资金结汇之日起15日内启动战略投资行为，并在原则批复之日起180日内完成战略投资。投资者未能在规定时间内按战略投资方案完成战略投资的，审批机关的原则批复自动失效。投资者应在原则批复失效之日起45日内，经外汇局核准后将结汇所得人民币资金购汇并汇出境外。　　第十七条 战略投资完成后，上市公司应于10日内凭以下文件到商务部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一）申请书；　　（二）商务部原则批复函；　　（三）证券登记结算机构出具的股份持有证明；　　（四）上市公司营业执照和法定代表人身份证明；　　（五）上市公司章程。　　商务部在收到上述全部文件之日起5日内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　　如投资者取得单一上市公司25％或以上股份并承诺在10年内持续持股不低于25％，商务部在颁发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上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25％或以上）”。　　第十八条 上市公司应自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签发之日起30日内，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办理公司类型变更登记，并提交下列文件：　　（一）公司法定代表人签署的申请变更申请书；　　（二）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三）证券登记结算机构出具的股份持有证明；　　（四）经公证、认证的投资者的合法开业证明；　　（五）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定应提交的其他文件。　　经核准变更的，工商行政管理机关在营业执照企业类型栏目中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字样，其中，投资者进行战略投资取得单一上市公司25％或以上股份并承诺在10年内持续持股不低于25%的，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25％或以上）”。　　第十九条 上市公司应自外商投资企业营业执照签发之日起30日内，到税务、海关、外汇管理等有关部门办理相关手续。外汇管理部门在所颁发的外汇登记证上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如投资者进行战略投资取得单一上市公司25％或以上股份并承诺在10年内持续持股不低于25%的，外汇管理部门在外汇登记证上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25％或以上）”。　　第二十条 除以下情形外，投资者不得进行证券买卖（B股除外）：　　（一）投资者进行战略投资所持上市公司A股股份，在其承诺的持股期限届满后可以出售；　　（二）投资者根据《证券法》相关规定须以要约方式进行收购的，在要约期间可以收购上市公司A股股东出售的股份；　　（三）投资者在上市公司股权分置改革前持有的非流通股份，在股权分置改革完成且限售期满后可以出售；　　（四）投资者在上市公司首次公开发行前持有的股份，在限售期满后可以出售；　　（五）投资者承诺的持股期限届满前，因其破产、清算、抵押等特殊原因需转让其股份的，经商务部批准可以转让。　　第二十一条 投资者减持股份使上市公司外资股比低于25%，上市公司应在10日内向商务部备案并办理变更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的相关手续。　　投资者减持股份使上市公司外资股比低于10%，且该投资者非为单一最大股东，上市公司应在10日内向审批机关备案并办理注销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的相关手续。　　第二十二条 投资者减持股份使上市公司外资股比低于25%,上市公司应自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变更之日起30日内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工商行政管理机关在营业执照上企业类型调整为“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上市公司应自营业执照变更之日起30日内到外汇管理部门办理变更外汇登记，外汇管理部门在外汇登记证上加注“外商投资股份公司（A股并购）”。　　投资者减持股份使上市公司外资股比低于10％，且投资者非为单一最大股东，上市公司自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注销之日起30日内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企业类型变更为股份有限公司。上市公司应自营业执照变更之日起30日内到外汇管理部门办理外汇登记注销手续。　　第二十三条 母公司通过其全资拥有的境外子公司进行战略投资并已按期完成的，母公司转让上述境外子公司前应向商务部报告，并根据本办法所列程序提出申请。新的受让方仍应符合本办法所规定的条件，承担母公司及其子公司在上市公司中的全部权利和义务，并依法履行向中国证监会报告、公告及其他法定义务。　　第二十四条 投资者通过A股市场将所持上市公司股份出让的，可凭以下文件向上市公司注册所在地外汇局申请购汇汇出：　　（一）书面申请；　　（二）为战略投资目的所开立的外国投资者专用外汇账户（收购类）内资金经外汇局核准结汇的核准件；　　（三）商务部出具的关于上市公司股权结构变更的批复文件；　　（四）证券经纪机构出具的有关证券交易证明文件。　　第二十五条 投资者持股比例低于25%的上市公司，其举借外债按照境内中资企业举借外债的有关规定办理。　　第二十六条 相关政府机构工作人员必须忠于职守、依法履行职责，不得利用职务便利牟取不正当利益，并对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二十七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进行战略投资，参照本办法办理。　　第二十八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30日后施行。附件：1.战略投资申请书（略） 2.战略投资方案（略）　　 　 　　 |